

##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년 12월 20일
- 나. 회부일자 : 2003년 12월 20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003.12. 22) 상정·의결

### 2.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상충된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적용범위 개정(안 제2조)
  - 현행 : 이 조례는 법·령·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조치명령 불이행자에게 적용한다.
  - 개정 : 이 조례는 법·령·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조치명령 불이행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단서 규정 신설)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중 법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사항 삭제

### 4. 참고자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232호, 2003.7.28 개정)
- 입법예고(2003.11.27~12.26)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서 동 근)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상충된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 안 제2조 적용범위에 “다만, 다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키고자 함이며, 과태료 부과기준 중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의 과태료부과 기준과 상충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7. 토론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과 태 료 부 과 기 준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부과 항목별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3항)	300	300	300
	3.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법 제14조)	200	300	300
	4.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5.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6.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50	70	100
8.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100	100	100	
9.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3)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1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나.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3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다.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라.영 제8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마.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다의 (1)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삭제)				

현행					개정안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0	3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3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2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0	1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바.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삭제)				
	(1)유통산업발전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때	200	3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외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때	50	1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사.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200	3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아.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300	300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생략)	200	300	300		3. (현행 4와 같음)	200	300	300
	5. (생략)	300	300	300		4. (현행 5와 같음)	300	300	300
	6. (생략)	50	100	300		5. (현행 6과 같음)	50	100	300
	7. (생략)	200	250	300		6. (현행 7과 같음)	200	250	300
	8. (생략)	50	70	100		7. (현행 8과 같음)	50	70	100
	9. (생략)	100	100	100		8. (현행 9와 같음)	100	100	100
	10. (생략)	50	70	100		9. (현행 10과 같음)	50	70	100